

January 03,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6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2. 26. ~ 12. 31.)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2020년을 맞이하여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0년 주요 부처별, 제도 및 법규 변경사항” 및 “제372회~제37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혁신적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269억원 투자 발표

2019. 12. 30.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가시권·군집비행이 가능한 드론운영 기술개발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 개발 등에 1,702.8억원 투자, ② 드론과 Data·Network·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드론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한 450억원 투자, ③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위한 30억원 투자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과기부2]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

2019. 12. 30. 발표된 동 계획은 “개발 환경 제공”에 초점이 있음. 주요 내용으로 ①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 허브에의 투자 확대(761억원), ② 200개의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인공지능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 ③ 인공지능 개방형 경진대회 개최하여 사업화비 총 32억원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한다](#)



[산자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발표

2019. 12. 23.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에너지전환 중점 16대 분야 90% 이상 지원, ② 미래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위해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③ 에너지산업 시장경쟁력 제고하여 경제적 성과 57조원 달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발표](#)



[기재부1] 국고보조금 관련 계획안 의결

2019. 12. 2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 계획(안)을 의결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경우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의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함.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 계획의 경우 주요 사업부처 대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10조원 내외 규모를 지정함

[\[참고자료\]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_업로드](#)



[기재부2]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2019. 12. 24.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②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중소기업 기본한도 2,400만원→3,600만원), ③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이 있음

[참고자료] 세법개정안 3개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3]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싱가포르 발효

2019. 12. 20.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2019. 12. 31.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표됨. 이로써 한-체코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단일화(5%)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인하(10%→5%)됨. 한-싱가포르의 경우 건설기업이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인하(15%→5%),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참고자료] 한-싱가포르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의결

2019. 12. 23. 동 심의회에서 ①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공정 R&D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임. ②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품목 R&D 사업에 2020년 1.7조원 등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할 예정임

[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2019. 12. 24.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하여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 촉진, ②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 ③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산업의 경쟁 촉진 유도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19년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 2020년 주요 부처별, 제도 및 법규 변경사항

부처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미래 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정위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산자부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추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LNG 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기재부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과기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게 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살생물제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살생물제 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이 승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승인유예를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중도에 승인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에 충분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을 도입하며, 살생물물질 승인 중단 시 하위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3호, 제21조 제2항 제3호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이론적으로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 속도 역시 이론적인 최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1항)

3. 제372회~제37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19. 12. 23. 등(12. 27/ 12. 30) 제372회~제374회 임시국회에서는 총 2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소개 드립니다.

[제372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내용 반영 등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민)	적용대상에 장비산업 포함, 환경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2.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 등이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및 기준 완화, 조세포탈(회계부정)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및 투명성 제고(회계감사 대상 확대, 회계 감리제도 도입 등),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 등 포함) 등	

법무법인 세종, 국회와 2020년도 자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은 국회와 “2020년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부터 국회 자문로펌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향후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관련 법령 및 국회 업무를 비롯한 각종 입법 규제 업무 등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차별화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